



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www.namwon.go.kr

선 람	기관의 장

제48호 2018. 11. 06(화)

조례

- 남원시 조례 제1437호 남원시 백동연죽장 전수회관 설립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 1
- 남원시 조례 제1438호 남원시 각종 증명 증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 6
- 남원시 조례 제1439호 남원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 12
- 남원시 조례 제1440호 남원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23
- 남원시 조례 제1441호 남원시 시민경찰봉사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 28
- 남원시 조례 제1442호 남원시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 31
- 남원시 조례 제1443호 남원시 위생업소 지원 조례 ----- 34

훈령

- 남원시 훈령 제392호 남원시 공무국외여행 규정 일부개정규정 ----- 42

고시

- 남원시 고시 제2018-139호 남원시 환경보전을 위한 폐기물처리업 업무처리 기준고시 ----- 44

회 람										
--------	--	--	--	--	--	--	--	--	--	--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백동연죽장 전수회관 설립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8년 11월 06일

남원시 조례 제 1437 호

남원시 백동연죽장 전수회관 설립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백동연죽장 전수회관 설립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를 “국가 무형문화재”로 한다.

제3조 중 “남원시”를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남원시 백동연죽장 기능보유자에게 위탁(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법인 및 기관·단체, 개인에게 위탁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7조 및 **제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준용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따르고,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남원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등을 준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생 략)</p> <p>2. "백동연죽장"이란 문화재청장이 지정한 <u>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제65호</u>를 말한다.</p>	<p>제2조(정의) ----- -----.</p> <p>1. (현행과 같음)</p> <p>2. ----- ----- <u>국가 무형문화재</u> ----- --.</p>
<p>제3조(위치) 전수회관은 <u>남원시 양림길 23</u>에 둔다.</p>	<p>제3조(위치) ----- <u>남원시(이하 "시"라 한다)</u> -----.</p>
<p>제6조(위탁운영) ① <u>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u>은 전수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u>남원시 백동연죽장 기능보유자에게 위탁(이하 "수탁자"라 한다)</u>할 수 있다.</p>	<p>제6조(위탁운영) ① ----- ----- ----- <u>법인 및 기관·단체, 개인에게 위탁 운영</u>----- -----.</p>
<p>② <u>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만료 1개월 전에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u></p>	<p><삭 제></p>
<p>③ <u>전수회관을 수탁받아 운영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수탁허가를 받아 시설 및 부대시설 전체를 관리한다.(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 계약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름)</u></p>	<p><삭 제></p>
<p>④ <u>전수회관 위탁운영 시 운영</u></p>	<p><삭 제></p>

비는 수탁자의 부담금, 그 밖의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비용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 수탁자는 전수회관 시설물 설치, 변경 및 증축 등 특별한 설비가 필요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지관리에 필요한 일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삭 제>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제4조에 따라 백동연죽장 기능전수·보존·육성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그 밖의 수입을 운영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허가받은 시설물 등을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줄 수 없으며 업무 범위에서 전수회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자는 전수회관을 멸실

<삭 제>

훼손하였을 때에는 시가에 해당 하는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복 구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 1. 수탁자가 제7조의 의무를 위 반한 경우
-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 3. 공익상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위탁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전수회관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은 남 원시에 귀속된다.

<신 설>

<삭 제>

제9조의2(준용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따르고, 「남원 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 리 조례」, 「남원시 공유재산관 리 조례」 등을 준용한다.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8년 11월 06일

남원시조례 제 1438 호

남원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4]

각종 증명 등 수수료(제3조 관련)

구 분	기준	요 액	비 고
(증 명)			
1. 신상에 관한 증명			
가. 부양사실 증명	1통	300원	
나. 재직(퇴직, 경력) 증명	1통	500원	
2. 영업·직업에 관한 증명			
가. 영업주	1통	500원	
나. 중소기업주	1통	500원	
다. 광업, 공업, 상업	1통	500원	
라. 농가, 비농가	1통	200원	
3.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가. 납세필 및 등록필	1통	300원	
나. 생산 실적	1통	300원	일제신고 등은 제외함
다. 수출 실적	1통	300원	
라. 납품 실적	1통	300원	
마. 건물 사용	1통	300원	
바. 공장원료 수요	1통	300원	
사. 보세물건에 관한 감찰(재교부)	1통	300원	
아. 공장등록 증명	1건	1,000원	
자. 공장등록대장 등본	1건	1,000원	
차. 시설보유 증명	1통	300원	
카. (식품환경)영업허가(휴·폐업)사실 증명	1통	300원	
타. 의료기관 약국 휴·폐업 사실 증명	1통	500원	
4. 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처분 또는 구역 내의 사실에 관한 증명 및 열람			
가. 미 분배 농지	1통	300원	
5.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			
가. 환지(예정지 지정)증명	1필지	400원	
나. 환지 예정지 분할	1필지	300원	
다. 환지 예정지에 대한 종전 토지 분할	1필지	300원	
라. 환지 예정지 변경 신청	1필지	300원	
마. 체비지 분할 신청	1통	300원	
바. 토지대금 완납증명	1통	300원	
6. 지방세에 관한 증명			

구 분	기준	요 액	비 고
가. 세목별 과세증명	1건	800원	
7. 회계에 관한 증명			
가. 거래액(물품공급실적) 증명	1통	1,000원	
나. 하자보증금 납부(예치) 증명	1통	1,000원	
다. 원천징수 공제 증명	1통	300원	
라. 공사준공기술 용역 및 공사도급 하자보증금 보관 확인원	1통	1,000원	
마. 보상금 지불 증명	1통	300원	
8. 주택에 관한 증명			
가. 공(시)영주택 분양금 납부 증명	1통	300원	
9. 그 밖의 각종 증명			
가. 수산업에 관한 증명	1통	300원	
나.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1필지	800원	
다. 개별(공동)주택가격 확인서	1주택	800원	
라.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1통	600원	
마. 기타 시설 공부 등에 발급하는 증명	1통	500원	
바.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확인서	1통	800원	
사.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확인서	1통	800원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			
1. 일반행정 관계			
가. 기타 각종 인·허가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1건	500원	
나. 공유재산의 대부 신청			
(1) 신 규	1건	5,000원	
(2) 갱신 또는 기간연장	1건	3,000원	
2. 농수산 관계			
가. 축사 표준설계도서 발급 신청	1매	200원	
나. 가축 인공수정소 등록사항 신청	1건	2,000원	
다. 내수면 어업관련 신청			
(1) 면허신청(공동어업)	1건	7,500원	
(2) 허가신청	1건	5,000원	
(3) 면허·허가연장 신청	1건	5,000원	
라. 비료생산업등록 및 수입업 신고			
(1) 비료생산업 등록	비료의종류마다	30,000원	
(2) 비료수입업 신고	비료의종류마다	20,000원	
3. 상공 및 동력자원 관계			
가. 공업입지 지정 신청	1건	2,000원	
나. 기계(전자)공업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1건	1,000원	

구 분	기준	요 액	비 고
다. 청과시장 경매자 임면승인 신청	1건	1,000원	
라. 석유판매업등록 및 조건부등록			
(1) 주유소	1건	20,000원	
(2) 용제판매소	1건	10,000원	
마. 석유판매업 신고			
(1) 일반판매소	1건	10,000원	
(2) 항공유 판매업	1건	10,000원	
(3) 특수판매소	1건	10,000원	
바. 석유대체연료등록 및 조건부 등록			
(1) 주유소	1건	20,000원	
(2) 판매소	1건	10,000원	
4. 건설관계			
가. 도선장 설치 허가	1건	1,000원	
나.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신청			
(1)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적당 5인 이하의 배	1건	500원	
(2) 기관을 장착하지 아니한 정원 6인 이상 10인 이하의 배	1건	900원	
(3) 기관을 장착하지 아니한 정원 11인 이상 20인 이하의 배	1건	1,300원	
(4) 기관을 장착하지 아니한 정원 21인 이상 의 배 및 기관을 장착한 배	1건	2,100원	
다. 공영주택의 양수, 양도 등 승인 요청	1건	500원	
라. 공(시)영주택 (증·개축)승인 요청	1건	500원	
마. 도시계획사업 허가 신청	1건	1,000원	
바. 토지이용계획 확인 신청서	1건	1,000원	
사.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필지	1,000원	
아. 체비지 명의변경 신청서	1건	500원	
자. 토지사용(체비지) 승낙서	1건	500원	
차. 체비지 확인서(대부·매수·주소변경 및 소유권 변경)	1건	500원	
카. 체비지 소유자 확인원	1건	500원	※칼라발급의 경우 1,500원
타. 권리변경(재개발지구)행위허가 신청	1건	500원	
파. 도로부지(지하도·상가·기타)점용허가 신청	1건	1,000원	
5. 보건사회 관계			
가. 의원, 치과의원 또는 한의원의 개설 신고	1건	40,000원	
나. 의료기관 개설 신고사항의 변경 신고 중 개설 장소 이전 신고	1건	20,000원	
다. 의료기관개설허가(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등)	1건	100,000원	
라.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의 변경 허가신고 중 개설 장소 이전 신고	1건	40,000원	

구 분	기준	요 액	비 고
마. 부속 의료기관 개설 허가 신청	1건	100,000원	
바. 부속 의료기관 개설 변경 허가 신청	1건	40,000원	
사. 부속 의료기관 개설 신고	1건	40,000원	
아. 부속 의료기관 개설 변경 신고	1건	20,000원	
자. 안경업소의 개설등록 신청	1건	10,000원	
차. 안경업소 양도·양수 신고	1건	10,000원	
카. 치과기공소 개설 등록 신청	1건	10,000원	
타. 치과기공소의 양도·양수신고	1건	10,000원	
파. 위생처리업 신고	1건	10,000원	
하. 위생처리업 신고사항 변경	1건	5,000원	
거. 세척제 제조업 신고	1건	15,000원 (10,000)	
너. 세척제 제조업 신고사항 변경	1건	8,000원 (5,000)	
더. 기타 위생용품 제조업 신고	1건	3,000원 (2,300)	()은
러. 기타 위생용품제조업 신고사항 변경	1건	2,300원 (1,200)	읍·면지역
머. 장난감 제조업 신고	1건	3,500원 (2,300)	
버. 장난감제조업 신고사항 변경	1건	2,300원 (1,200)	
6. 문화공보 관계			
가. 공연장 등록신청	1건	10,000원	
나. 공연장 변경등록 신청	1건	5,000원	
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업종			
(1) 게임제작업 등록 신청	1건	20,000원	
(2) 게임배급업 등록 신청	1건	20,000원	
(3) 일반 게임제공업 허가 신청	1건	20,000원	
(4) 청소년 게임제공업 등록 신청	1건	20,000원	
(5)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 등록 신청	1건	20,000원	
(6) 복합유통 게임제공업 등록 신청	1건	20,000원	
(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업종 허가·등록 또는 신고사항 변경	1건	5,000원	
라. 영화 및 비디오물에 관한 업종			
(1) 영화업 신고	1건	20,000원	
(2) 영화업 변경 신고	1건	10,000원	
(3)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신청	1건	5,000원	
(4) 영화상영권 등록 신청	1건	20,000원	
(5) 영화상영권 변경등록 신청	1건	10,000원	
(6) 비디오물 제작업 신고	1건	20,000원	
(7) 비디오 배급업 신고	1건	20,000원	
(8) 비디오물 시청 제공업등록 신청	1건	20,000원	
(9) 비디오제작업·비디오배급업 변경 신고	1건	10,000원	

구 분	기준	요 액	비 고
(10)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변경등록 신청	1건	5,000원	
마.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업종<신설>			
(1) 온라인음악 서비스제공업 신고	1건	20,000원	
(2) 온라인음악 서비스제공업 변경 신고	1건	10,000원	
(3) 노래연습장업 등록 신청	1건	20,000원	
(4)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 신청	1건	5,000원	
바. 체육시설업의 신고	1건	30,000원	
사. 체육시설업의 변경 신고	1건	10,000원	
아.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 허가)	1건	60,000원	
자.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 허가)	1건	50,000원	
차.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1건	30,000원	
카.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1건	15,000원	
타. 기타 유원시설업 신고	1건	30,000원	
파. 기타 유원시설업 신고사항 변경 신고	1건	15,000원	
하. 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	1건	10,000원	
거. 출판사 신고	1건	10,000원	
너. 출판사 변경신고	1건	5,000원	
7. 부동산중개사무소 관계			
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신청			
(1) 법인인 중개업자	1건	30,000원	
(2)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	1건	20,000원	
(3) 분사무소 설치신고	1건	10,000원	
나. 재교부신청			
(1) 중개사무소 등록증	1건	800원	
(2) 분사무소 설치신고필증	1건	800원	
(3)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1건	800원	
8. 교통관계			
가.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확인 신청	1건	6,000원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8년 11월 06일

남원시 조례 제 1439 호

남원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를 통한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남원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남원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이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행한 상품권으로서 이를 소지한 사람에게 재화 및 용역 제공을 약속하고, 미리 대가를 받고 일반인에게 판매하는 종이 및 전자적 형태의 유가증권을 말한다.
2. “판매대행점”이란 시장과 계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보관·판매 및 환전 업무를 대행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3. “가맹점”이란 상품권을 이용하여 재화와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시장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4. “사용자”란 상품권을 구입하고 이를 사용하여 재화와 용역을 거래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발행 및 판매 등) ① 상품권은 시장이 발행한다.

② 시장은 상품권 발행시 위·변조와 부정발행 방지를 위하여 한국조폐공사 등 전문업체와 인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상품권 보관·판매 및 환전 등을 금융기관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상품권의 종류 및 유효기간) ① 상품권의 종류와 권면금액, 디자인 및 기재사항 등은 시장이 결정한다.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제5조(상품권 사용대상 및 사용제한) ① 상품권은 남원시(이하 “시”라 다)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대상 중 제6조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사업자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와 이와 유사한 범위의 상행위자
3. 제1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시(출자·출연기관 포함) 및 시의 업무위탁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또는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대중교통,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품권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 1.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 2.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의 “사행산업” 및 “불법사행산업”을 영위하는 업종
- 3.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제8호의 유흥주점

제6조(가맹점 등록 및 취소) ①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가맹점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등록사항 변경 시에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가맹점 등록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을 심사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상품권 가맹점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가맹점은 등록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가맹점 등록해지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가맹점 등록을 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 또는 취소 할 수 있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가맹점에 등록한 경우
- 2. 제5조제2항에 따른 상품권 사용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 3. 가맹점이 제6조제1항 및 제7조를 위반하는 경우

제7조(가맹점 준수사항) ① 가맹점은 사용자가 가맹점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를 하여야 하며, 가맹점 표시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상품권 소지자에게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상품권

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상품권

③ 가맹점은 사용자가 상품권의 권면금액(상품권을 여러 장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금액) 중 100분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현금 또는 상품권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판매대행점 준수사항) ①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보관·판매 및 환전 업무를 수행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상품권의 분실 등 위탁업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②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판매량, 환전액 및 환전잔액 등을 매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품권 관리시스템에 상품권 입고, 판매, 회수, 폐기 등 유통내용을 매일 처리하여 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할 경우 생략할 수 있다.

③ 판매대행점은 제14조의 담당공무원이 상품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업장을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사용자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상품권을 가맹점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상품권이 훼손되어 상품권 권면 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식별할 수 없거나 시장이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상품권의 위조·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③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발행된 상품권은 가맹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다.

제10조(환전청구 및 환전) ① 가맹점이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매대행점에 청구해야 한다.

② 판매대행점은 제1항에 따른 환전청구가 있는 경우 시장이 정하는 기한 내에 환전하여야 한다.

③ 가맹점의 월간 환전한도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판매 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재사용이 불가능 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시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하며, 보관기간이 경과된 상품권은 담당 공무원의 입회하에 폐기처분하고 폐기조서를 작성·보관해야 한다.

제11조(상품권 구입 및 할인·수수료) ① 시장은 상품권의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권면 금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상품권 할인 구매는 개인의 경우 월간 50만원, 연간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법인 및 가맹점 상인의 경우 할인구매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상품권의 판매 및 환전 수수료는 판매 또는 환전 금액의 각 1000분의 5 이내의 범위에서 판매대행점과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예산지원 등) ① 시장은 상품권 발행·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에 반영할 수 있다.

제13조(상품권 활성화 시책) ① 시장은 상품권 사용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구매포인트 적립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상품권의 판매 촉진을 위한 행사 및 축제, 상품권 홍보 등 마케팅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상품권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현금 대신 상품권으로 돌려주거나 지급할 수 있다.

1. 공공시설이나 관광지 등 입장료의 일부
2. 주민이나 공무원, 공공기관·기업체 등의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 장려금, 포상금 및 시상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

제14조(회계장부 및 담당공무원의 지정) ① 시장은 상품권 발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계장부 등을 비치하고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담당공무원은 판매대행점에 대한 감독권을 가지며, 판매대행점 등에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제15조(유효기간 경과 상품권)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환전이 청구되지 아니한 상품권 판매대금은 시로 귀속한다.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및 「상법」, 「전자금융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계 법령 및 거래관행에 따른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 서식]

남원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 변경 신청서

(가맹점 번호 : 남원 - 호)

신청인	대표자		생년월일 성 별	(남, 여)
	상 호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사 업 소 소 재 지		전화번호 :	
	주 소		(휴대폰 :)
신청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p>「남원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남원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 변경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p>				
남원시장 귀하				
붙임서류	1. 가맹점 등록증 1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별지 제3호 서식]

남원 - 호

남원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증

- 상 호 :
- 소 재 지 :
- 성 명 :
- 생년월일 : (남, 여)

「남원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남원사랑 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하고 등록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장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8년 11월 06일

남원시 조례 제 1440 호

남원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 등 기준은 피해상황, 재정 여건,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 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 등을 고려한 비용으로 한다.

제4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1항제4호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할 수 있다.

- 1. 장례비 :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의 장례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
- 2. 치료비 : 재난으로 부상당한 사람의 치료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장례비·치료비 지원의 구체적인 금액은 시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지원금액 등의 구상) 시장은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이하 “원인제공자”라 한다)에게 제4조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위하여 부담한 지원금액 등 비용전부를 청구한다.

제4조의3(구상에 따른 책임) 원인제공자는 시장이 제4조의2에 따라 청구한 비용이 과도한 경우 통상적 수준 및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주장하여 시장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때에는 시장에게 초과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5조 중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를 “원인제공자”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간접지원”을 “간접지원 및 장례비·치료비 지원”으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재원의 확보)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 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발생하여 진행 중인 사회재난으로서 제3조에 따른 지원결정이 완료되지 아니한 사회재난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지원기준) ① 시장은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p> <p>1. ~ 3. (생 략)</p> <p><u><신 설></u></p> <p>4. (생 략)</p> <p><u>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은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 피해상황,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u></p> <p><u><신 설></u></p>	<p>제4조(지원기준) ①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u>4.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u></p> <p>5. (현행 제4호와 같음)</p> <p><u>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 등 기준은 피해상황, 재정 여건,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 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 등을 고려한 비용으로 한다.</u></p> <p><u>③ 제1항 제4호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할 수 있다.</u></p> <p><u>1. 장례비 :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의 장례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u></p> <p><u>2. 치료비 : 재난으로 부상당한 사람의 치료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u></p>

① 생활안정지원 및 간접지원 (이하 "생활안정지원 등"이라 한다)은 해당 재난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실시한다.

② ~ ⑥ (생략)

제10조(재원의 확보)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시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예비비 등을 활용하여 소요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① ----- 간접지원 및 장례비·치료비 지원-----

-----.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0조(재원의 확보)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시민경찰봉사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8년 11월 06일

남원시 조례 제 1441 호

남원시 시민경찰봉사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선진교통질서 확립과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남원시 시민경찰봉사협의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남원시 시민경찰봉사협의회” (이하 “시민경찰”이라 한다)란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하여 시민의식이 투철한 지역 주민으로 구성되어 제3조의 임무를 수행하는 비영리 목적의 단체 또는 주민조직을 말한다.

제3조(임무) 시민경찰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질서유지 활동
2. 교통사고 예방 관련 캠페인 및 기초질서 계도 활동
3. 시 관내 각종 행사개최 시 교통소통 활동, 보행자 안전보호 및 안내
4. 취약지역에 대한 범죄예방 순찰 및 범죄 신고

5. 그 밖에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사항

제4조(보조금 등 지원) ① 시장은 시민경찰이 제3조의 임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활동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제5조의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하거나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을 경우

제5조(감독 및 평가)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경찰의 연중 활동실적을 연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지원금 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 시장은 관할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시민경찰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포상) 시장은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그 밖에 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시민경찰 회원에게 「남원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활동하고 있는 남원시 시민경찰봉사협회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전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8년 11월 06일

남원시 조례 제 1442 호

남원시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남원시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원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보건진료소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마다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3. 그 밖에 협회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제4조(구성) ① 협회회는 회장 및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성별이 위촉 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은 보건진료소의 관할 구역에서 보건진료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③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7조(회장의 직무) ① 회장은 협회회를 대표하며 협회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협회회의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② 협회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① 협회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건진료소장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협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운영하고 있는 협회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협회회로 본다.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위생업소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8년 11월 06일

남원시 조례 제 1443 호

남원시 위생업소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음식문화개선과 위생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위생업소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
2. “음식문화 개선사업”이란 음식물과 식량자원의 낭비를 막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3. “좋은 식단 실천업소”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하여 위생적이고 알뜰한 식단, 균형 잡힌 식단을 자율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업소를 말한다.
4. “우수 위생업소”란 친절하고 위생관리 상태 등이 우수한 업소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제2조 제1호에

따른 위생업소로 하며,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좋은 식단 실천업소
2. 우수 위생업소

제4조(지원사업)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원대상 위생업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안전한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영업장, 화장실, 주방 및 간판 등 시설개선 사업
2. 위생해충 구제 및 방역 지원 사업
3. 위생수준 향상 및 음식문화 발전을 위한 행사, 연구개발 및 홍보·교육사업
4. 안전한 위생 관리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 사업
5. 우수 위생업소 지정표지판 지원 사업
6. 관광진흥을 위한 홍보물 등의 지원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신청) 사업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업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제4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
2. 그 밖에 별도의 지침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제6조(현지조사 및 선정) 시장은 사업신청서를 제출한 업소에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남원시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제7조(지원의 제한 등) ① 시장은 지원대상 위생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
2. 영업주의 주소가 시에 두지 아니한 경우
3.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4. 이 조례 및 다른 사업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지 5년 미만인 업소

②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남원시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지원을 위하여 남원시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원대상 위생업소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지원 사업 정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 관광 및 지역경제발전과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한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관광업무부서 과장, 위생업무부서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관광 및 위생업소 관련 단체의 임직원
2. 관광산업, 음식문화 개발 및 위생분야에 지식과 덕망을 갖춘 전문가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생업무 담당이 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포상) 시장은 음식문화개선과 위생수준 향상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위
생업소 등에게 「남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남원시 지방보조
금 관리 조례」 및 「남원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위생업소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업소현황	업 소 명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대 표 자		휴 대 폰	
			소재지 전화	
	업 소 건물소유 형 태	자가 <input type="checkbox"/> 전세 <input type="checkbox"/> 월세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음식점	유형	한식 <input type="checkbox"/> 중식 <input type="checkbox"/> 일식 <input type="checkbox"/> 양식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영업장 면적	m ²
시설개선자금 신청금액	총 사업비 원(자부담 , 지원신청액)			
사업내용				
붙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소재지 등기부 등본(건물) 1부 3. 건물주 동의서(건물 임대자 해당 시) 1부. 5. 건물주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건물임대자 해당 시)1부 6. 견적서 1부 7. 사업자 등록증 및 통장사본 1부 (시공업체) 8. 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세무서 발행), 도장, 신분증 9. 자부담금 입금증빙서(계좌이체 통장사본 또는 무통장 입금증)			
「남원시 위생업소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을 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남원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사업계획서

1. 사업명 : 년 위생업소 시설개선(비품구입) 지원사업

2. 사업개요

가. 사업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업소명 : ○ 주 소 :

나. 필요성 : 위생업소 시설개선을 통한 쾌적한 위생업소 분위기를 제공하여 업소에 대한 이미지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다. 소재지 :

라. 기 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3. 소요예산

가. 사업비 산출내역

사업내용	재원별(천원)			비고
	계	시비	자부담	
계				

※ 내역이 많을 경우 별지작성 가능함

나. 보조금 이외 자부담 확보대책

○ 부 담 자 :

○ 부담금액 : 원

○ 부담방법 : 본인부담

4. 기대효과

○ 위생업소 시설개선을 통하여 신민과 남원을 찾는 관광객으로부터 위생업소에 대한 이미지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별지 제3호서식]

건물주 동의서

1. 건물주 인적사항

가. 성 명 :

나. 생 년 월 일 :

다. 주 소 :

라. 전 화 번 호: (휴대폰 :)

2. 업소현황

가. 업 소 명 :

나. 소 재 지 :

다. 대 표 자 :

라. 전 화 번 호: (휴대폰)

3. 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 내용

가.

나.

상기 본인은 위 업소의 건물주로서 년 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신청하고 시설개선 지원 사업 추진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위 동의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붙임서류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남 원 시 장 귀하

남원시 공무국외여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18년 11월 06일

남원시 훈령 제 392 호

남원시 공무국외여행 규정 일부개정규정

남원시 공무국외여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3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을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9조(회의) ①·② (생략)</p> <p>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가 어렵거나 서면으로 심사하는 것이 효율적 이라고 판단되는 <u>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심사·의결할 수 있다.</u></p> <p>1. <u>관련 부서 자체계획에 따라 결정된 “퇴직예정공무원 산업시찰”</u></p> <p>2. <u>별도의 심사절차를 거쳐 여행자를 선정하는 “공무원 글로벌 정책연수”</u></p>	<p>제9조(회의)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u>경우에는</u>----- ----- -----.</p> <p><삭 제></p> <p><삭 제></p>

남원시 고시 제2018-139호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5(재활용 제품 또는 물질에 관한 유해성기준)와 같은 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같은 법 제30조(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 폐기물관리법 제46조(폐기물처리신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남원시 환경기본조례 제11조(규제조치) 등에 대한 입지제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5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환경보전을 위한 폐기물처리업 업무처리 기준고시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우리시는 전북최고의 청정지역으로써 깨끗하고 쾌적한 농촌 환경 등을 조성하여야 함에도 폐기물처리업체가 무분별하게 건립을 하고 있어, 이로 인한 환경오염이 증가되어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자연환경, 농경지에 피해를 유발하고 있어 폐기물처리업에 대한 인허가 업무처리기준(입지제한)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폐기물처리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 등을 할 때에는 다른 법률에 별도의 제한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을 적용한다.

1.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5제1항에 따라 유해성기준을 고시한 재활용 제품 제조 또는 재활용업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 제2호~제7호까지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폐기물 수집운반업 제외)

3.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 대상 시설(단, 폐기물처리신고자 및 자가 처리자는 제외)
4.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신고 중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6] 1.2.5.10~12호
5.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6. 물환경보전법 제60조에 따른 기타수질오염원 설치신고(폐차장 등)

제3조(제한지역) 제한지역은 남원시 전 지역으로 한다.

제4조(제한기간)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5조(제한방법) 사업예정지 주변의 여건, 도로교통(진출입로)사항, 사업예정지 인근 주민과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기타 공익을 저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지제한이 필요한 경우 남원시 환경협의회 심의를 거쳐 입지를 제한한다.

1. 사업예정지 주변의 여건

- 가. 사업장의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1Km이내에는 주택, 상가, 축사, 과수원, 농가, 교육, 종교시설, 식품관련시설 등이 없어야 한다.
- 나. 마을(주택)과 근접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함으로써 대기, 소음·악취 등 유해환경으로 인하여 주민의 피해가 우려되거나, 농경지, 기타 당해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의 일상생활 및 자연환경을 현저히 저해하게 된다고 판단되는 지역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2. 도로교통 사항

- 가. 도로법상 도로가 아닌 진입로의 경우 폭 6m이상 포장도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 나. 진입로의 경우 도로중심으로부터 양측으로 100m이내에 주택가, 상가, 축사, 과수원, 농가, 교육, 종교시설, 식품관련시설 등이 없어야

한다.

다. 사도일 경우 토지주의 사용 승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사업예정지 인근주민과 자연환경이 미치는 영향

가. 폐기물처리 등이 이루어지는 일련의 모든 공정은 밀폐형으로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등으로 인하여 마을의 고유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생활환경 등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는 지역이어야 한다.

4. 기타 사항

가. 공익 및 주민편익을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환경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나. 우리 시의 폐기물발생량 및 처리능력에 따라 타 지역의 폐기물 반입처리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폐기물처리를 위한 건축, 농지, 환경 등 인허가를 득한 경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